

현 행	개 정(안)	비 고
제9장 학위수여, 논문, 졸업사정, 명예박사 제36조(학위수여) 학위는 제37조의 자격을 구비한 자로 학위 청구논문 심사에 합격한 자에게는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별지양식(1, 2)에 의한 목회학석사(M.Div.), 신학석사(Th.M.), 문학석사(M.A.), 철학박사(Ph.D.) 학위를 수여한다. 학위 수여는 1학기, 2학기에 할 수도 있다.	제9장 학위수여, 논문, 졸업사정, 명예박사 제36조(학위수여) 학위는 제37조의 자격을 구비한 자로 학위 청구논문 심사에 합격한 자에게는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별지양식(1, 2, 3, 4, 5)에 의한 목회학석사(M.Div.), 신학석사(Th.M.), 문학석사(M.A.), 철학박사(Ph.D.) 학위를 수여한다. 학위 수여는 1학기, 2학기에 할 수도 있다.	